출생통보제 도입 30일 국회 처리

신고 누락으로 '유령 아동' 발생 않도록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통보
여야 도입 공감대…위기 임산부 보호제 오늘 복지위서 특별법 논의

여야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7~28일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사위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안 개정안이 10여건 계류돼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 도입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루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게 됐다.

법사위는 소위에서 개정안을 심의한 뒤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법안심사를 진행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미등록 영유아 사고 방지를 위한 또 다른 한축인 '보호출산제'가 논의된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아동을 보호해 줄 수 있게 한 제도로, '익명출산제', '비밀출산제'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020년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오는 27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특별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 심사 이후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까지 받아야 하는 만큼, 이달 30일을 넘겨 내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23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조치를 적극 검토해 '미등록 갓난아이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언급했고,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회 법안 심사와는 별도로 정부·여당은 오는 28일 아동보호 체계 개선 대책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의료계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백범 김구 선생 74주기 추모식 — 26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74주기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종찬 광복회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김형오 전 국회의장. /연합뉴스

민주 "체포안 부결 위한 임시회 안 열것"

"혁신위 불체포특권 제안 존중"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에도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면서 "체포영장이 온 경우에 비회기 때는 나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번 사안은 이날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으며 향후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라고 권 대변인은 전했다.

권 대변인은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지난 23일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제가 불체포특권 행사를 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 그렇게 아시면 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野 "오염수 등 논의"… 與 "안건합의 안돼"

여야 대치 속 과방위 파행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장 선임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회의가 결국 파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신임위원장 선출 이후 여야 간 공수가 교대된 상황에서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의 명의로 이날 오전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냈다.

안건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구성과 KBS 수신료 분리징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의 논란과 관련한 현안질의 및 소위원회 개선의 건을 적었다.

장 위원장은 그러나 여당 간사인 같은 당 박성중 의원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전체회의에 불참했고, 나머지 여당 의원들도 회의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간사 간 협의 없이 계속 (전체회의를) 잡는 게 모양이 좋지 않아 보인다"며 "간사 간 협의로 법안이 통과되면 언제든지 합의해 전체회의를 열 수 있다"고 한 뒤 1분 30여초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여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퇴장한 뒤 조 의원은 "위원장이 사회권을 넘기고 대행인 여당 간사가 산회를 선포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여당이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조 의원이 '아들 학교 폭력' 의혹이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될 것이 유력한 상황을 비판하는 도중 회의장 마이크가 꺼지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과방위 행정실장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檢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대장동 업자들 도움 받은 의혹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양 전 특검보와 공모,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12월 남욱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여수시,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장비·인력 확대"

주철현 의원, 검사기간 개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함에 따라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여수시에도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가 도입되고, 검사인력이 충원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생산단계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여수를 비롯해 목포, 제주 등 지원 3곳에 방사능 검사장비를 각 1대씩 도입하고, 현장 시료 채취를 위한 인력도 배치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에 새로 도입되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는 대당 가격이 1억 6000만원에 달하는 '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 분석기(GC-6019)'와 1억4000만원 상당의 '자동시료교환장치(NSC-30)'이다. 특히 분석기만 운용할 때의 일일 방사능 검사 처리건수는 3건에 그치지만, 주철현 의원의 요청으로 함께 도입되는 자동시료교환장치를 동시 운용하면 일일 처리건수가 7건으로 대폭 향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능 검사장비 도입과 함께 검사 인력도 보강된다. 여수지원의 현원 10명 중 2명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현장 시료 채취를 담당할 공무원 1명도 7월말부터 배치된다.

여수는 전남의 대표적인 수산물 생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은 자체 방사능 검사장비가 없다보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천지원까지 시료를 택배로 송부해 분석함에 따라 평균 4~5일이나 소요돼 왔는데, 이번 장비 도입으로 검사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주철현 의원은 "이번 검사장비 도입으로 여수뿐만 아니라, 순천·광양·곡성·구례·고흥·화순·보성 등 전남동부권에서 채취하는 수산물 검사기간이 평균 1~2일 정도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3-516호]

2023년도 하반기 한·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KORIL R&D & Pilot Program) 신규과제 공고

한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는 양국 간 공동산업연구를 증진하고자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연구, 개발 및 기술혁신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을 통해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양국 산업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 하반기 한-이스라엘 국제공동 기술개발사업 KORIL R&D 및 Pilot 프로그램 신규 과제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여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2. 지원 분야
○ 산업기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함 (단, 국방 분야는 제외)

3. 지원내용
○ 양국 정부 간 조약에 기반하여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동R&D 과제를 구성하고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업에 자금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양국 기업에 한함
– 양국 대학이나 연구소는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며, 참여시 정부출연금의 20% 이내가 되도록 편성해야 함
※ 양국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으로 하나의 영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R&D 프로그램) 양국 기업 간 공동 R&D를 통한 상용화 기술 개발 지원 (TRL 4~6 단계)
○ (Pilot 프로그램) 양국 기업의 지식 재산권 및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상용화 촉진을 위한 R&D 지원(TRL 6~8단계)

4.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타당성 조사 (Feasibility Study)	R&D 프로그램	Pilot 프로그램
과제규모	최대 10만불	제한없음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최대 5만불/과제	최대 300만불/과제	최대 100만불/과제
지원기간	6개월이내	2년이내	1년이내

※ (타당성조사) R&D 前단계 기술 개발 타당성 및 사업성 조사 지원 사업으로 연중 상시 접수 (재단 문의)

5. 추진절차 및 일정 (5. 추진절차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R&D 및 Pilot 프로그램

절차	일정	비고
사업 공고	'23.6.16	산업통상자원부, 이스라엘혁신청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이하 "재단") 한국 본부, 이스라엘 사무소
사업계획서 접수	'23.8.31	(한) 18시까지 제출(한국 본부) (이) 12시까지 제출(이스라엘사무소) ※각국 온라인 접수시스템 동시 업로드 필수
접수과제 사전검토	'23년 9월	사전지원제외대상 분류
심층 평가	'23년 10~11월	국가별 개별 평가(대면평가, 현장평가)
과제 선정(양국 이사회)	'23년 12월(예정)	최종 심의 (양국 협의 후 확정)
지원대상과제 확정 협약 체결	'24년 1월(예정)	양국 기업 및 재단 양국 사무소

* 타당성 조사는 연중 수시 접수(양국 평가서를 기반으로 이사회 의결 없이 재단 자체 심의)

II.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및 기술료 징수 방법

1.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및 지급 방법
○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출연금)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으로 구성(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과 현물의 부담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음)
○ (R&D 프로그램) ❶ (협약 체결) 1차 지원금(승인지원금의 40%) 선지급, ❷ (중간평가) 기술평가 및 사업비 정산 후 중간 지원금(승인지원금의 30%) 지급, ❸ (최종 평가) 기술평가 및 사업비 정산 후 최종 지원금(승인지원금의 30%까지) 지급
○ (Pilot 프로그램) ❶ (협약 체결) 1차 지원금(승인지원금의 50%) 선지급, ❷ (최종 평가) 기술평가 및 사업비 정산 후 최종 지원금(승인지원금의 50%까지) 지급

2.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 양국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체 연구개발비를 합산하여 제출함
○ 양국의 연구개발비 비율은 최대 7:3까지 가능(각 국가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최소 연구개발비 비율은 30%임)
○ 양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출연금 차등 지급(타당성 조사 과제 예외)
※ 정부출연금 차등 지급 기준은 Ⅲ. 평가절차 및 기준, 2. 표 참고

3. 기술료 징수 기준 및 방법
○ 과제종료 후, 관련 기술을 통한 매출이 발생할 경우 각국의 기업은 자국의 기술료 징수 방식을 따름

가. 기술료 징수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과제의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또는 연구개발 성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징수

나. 기술료 징수방식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ㅁ 영리기관의 기술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수익금액×기술기여도×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수익금액×기술기여도×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수익금액×기술기여도×5%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4.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구분	내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 → 과제참여 · 관리 → 유사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참여제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개인 신용조회 등의서 제출(총괄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기업인 경우 대표자)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해서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③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 제2조제1항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 신용평가,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에서 발급한 기업신용등급만 인정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자금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제7조(재무요건 미적용)에 의거하여 중소 · 중견기업은 2020년, 2021년, 2022년 및 2023년 회계연도에 대해 기술개발평가 지침 별표2 2. 신청자격 검토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의 검토기준 중 5호 전단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 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제호로부터 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연구개발기관유형(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
중소기업	2

구분	내용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다만,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 · 중견기업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본문의 적용을 제외한다.
의무사항 불이행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III. 평가절차 및 기준

1. 평가 및 협약체결 절차

절차	일정	비고
공고	6.16(금)	산업부, 혁신청, 재단
사업계획서 접수	~8.31(목)	· 양국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하나의 영문 사업계획서를 작성
사전검토	~9월 중	· 양국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하나의 영문 사업계획서를 작성
사업계획서 평가	10~11월	· 대면 평가 및 현장 평가 (양국 개별 평가)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통보	~12월	·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통보(양국 기업 대상)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24.1월~	· 양국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재단 간의 협약 체결
공동과제 수행	'24.1월~	

* 타당성 조사는 연중 수시 접수(양국 평가서를 기반으로 이사회 의결 없이 재단 자체 심의)
※ 상기 추진 절차는 양국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 결과 별 정부출연금 차등 지급 기준

평가 등급		A	B+	B	B-	C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50%	45%	40%	35%	30%
과제당 최대지원금 (양국 합계)	R&D	300만 달러	270만 달러	240만 달러	210만 달러	180만 달러
	Pilot	100만 달러	90만 달러	80만 달러	70만 달러	60만 달러
	타당성 조사	평가등급 상관없이 승인과제비용의 50% 지원, 최대 5만불까지				

* (예시)평가결과가 A일 경우: 과제예산의 50% 혹은 최대 지원금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함

3. 평가 기준 (양국 공통)

① 기업의 기술 및 재무적 역량	② 기업의 상업화/마케팅 역량	③ 기업간 시너지
④ 상호 보완성	⑤ 혁신성	⑥ 상업화 성공 가능성

IV. 근거법령 및 규정

1. 근거법령
○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연구, 개발 및 기술혁신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2022.8, 발효)

2. 관련 규정
○ 한국 · 이스라엘 사업 운영요령 : KORIL-RDF HANDBOOK (9차 개정본)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준용

V. 신청방법 및 문의처

1. 신청 방법
○ 접수기한
– 한국 기업 : '23년 8월 31일(목) 18:00까지
– 이스라엘 기업 : '23년 8월 31일(목) 12:00까지
○ 신청방법 (오프라인 제출 불필요)
– 한국 기업 : 재단 홈페이지 내 "Proposal Submission"*을 통해 업로드
* (온라인 접수 경로) 한국 ·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홈페이지 (www.koril.org) → KORIL Fund → Proposal Submission
※ 홈페이지 업로드 관련 문의 :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기술협력전략실 남기훈 연구원 (02-2166-0817, khnam@koril.org)
– 이스라엘 기업 : 이스라엘 혁신청 온라인 시스템 업로드
○ 양식교부 : 한국 ·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홈페이지(www.koril.org) → KORIL Fund → KORIL R&D Prgoram → Guidelines and Forms → Proposal Form(MS Word 양식) 다운로드

※ 양국 기업 동시 온라인 업로드 제출을 원칙으로 함.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접수 불가
온라인 접수 마감일에는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및 제출 요망
※ 새로운 기술 개발 없이 상대국 기업의 단순 용역(시험, 조립 등), 위탁과제 성격의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조,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문의처(담당자)
○ 한 국 :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기술협력전략실 이수아 연구원 (02-2166-0814, sooahlee@koril.org)
○ 이스라엘 :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Hadar Zax, Israel Manager (Hadar.Zax@innovationisrael.org.il)